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신에너지산업과 오재열 사무관 앞

- 전화 : 044-203-5396

- 팩스 : 044-203-4069

- 이메일 : luckyojoy@korea.kr

4.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신에너지산업과(전화 044-203-5396) 또는 에너지안전과(044-203-52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부공고제2020-819호

수도법 제7조의2(상수원보호구역 외의 지역에서의 공장설립의 제한),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의 범위) 및 제14조의3(공장설립 승인지역의 범위)의 규정에 따른 상수원상류 공장설립 제한지역과 승인지역의 지형도면(환경부 고시 제2016-213호('16.11.28.) 및 환경부 고시 제2020-116호('20.6.1.))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하고자 하며, 고시 전에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8일

환 경 부 장 관

「상수원상류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변경고시 행정예고

1. 지역·지구 등의 명칭 및 최초 지정일

가. 지역·지구 등의 명칭 : 상수원상류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나. 최초지정일

- 공장설립제한지역(시행령 제14조의2) 및 공장설립승인지역(시행령 제14조의3제1호) : 2010년 11월 26일

- 공장설립승인지역(시행령 제14조의3제2호) : 2014년 11월 28일

2. 상수원상류 공장설립 제한·승인지역 도면 변경

가. 변경 사유

1) 경북 문경시 문경(하리) 상수원보호구역의 해제에 따라 상수원 상류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을 해제

○ 2019. 10. 2. 문경시 수도정비기본계획 부분변경 승인(낙동강청)

- 문경(하리) 취수장(4,000m³/일) 폐지 및 문경(하리)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 문경(하리)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문경시 고시 제2019-192호)

○ 문경시 상수도사업소-8928(2020.9.3., “공장설립제한지역 지정 변경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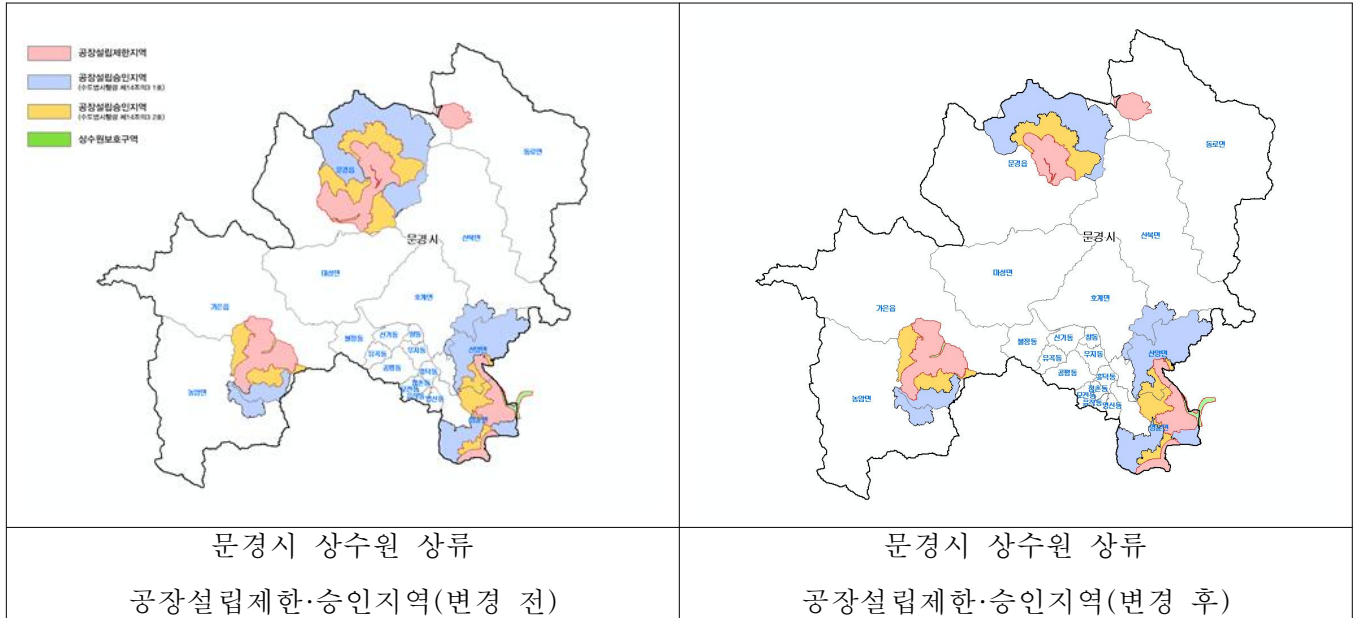
2) 경남 고령광역취수장 상류 성주군 용암면 사곡리·동락리 일원 공장설립제한지역 및 승인지역 (시행령 제14조의3제2호)을 공장설립승인지역(시행령 제14조의3제1호)으로 지형도면이 작성·고시되어 있어 바로잡음

○ 2012.11.21.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지형도면 고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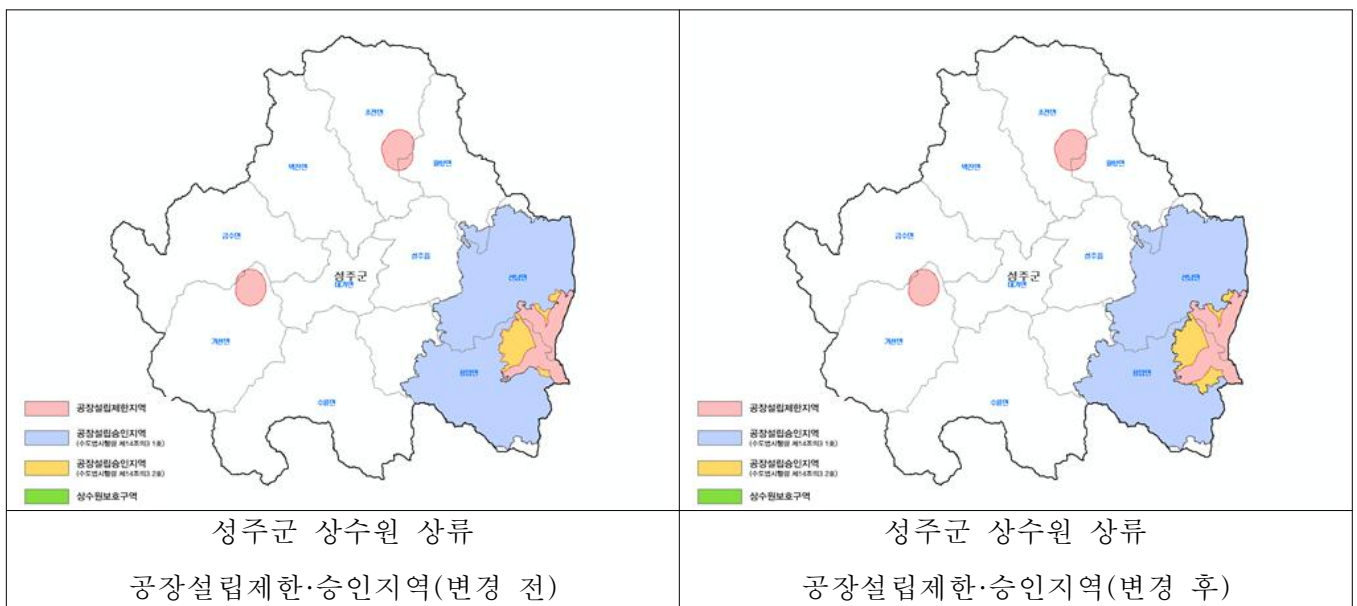
○ 2016.11.28. 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3 개정(승인지역(2호) 신설)에 따른 변경고시

나. 상수원상류 공장설립 제한·승인지역 변경전후 도면

1) 경상북도 문경시



2) 경상북도 성주군



다. 변경지역 면적 현황

시(도)	시(군,구)	공장설립 제한지역 및 승인지역 면적(km ²)							
		공장설립 제한지역		공장설립 승인지역				합계	
		변경 전	변경 후	(시행령 14조의3제1호)		(시행령 14조의3제2호)		변경 전	변경 후
경북	문경시 ^{주1)}	59.81	46.69	98.50	86.17	47.70	34.84	205.71	167.71
경북	성주군 ^{주2)}	21.69	22.74	106.24	103.82	6.68	8.05	134.61	134.61

주1) 문경시 문경(하리)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 따른 문경시의 일부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해제

주2) 고령광역취수장 상류 성주군 용암면 사곡리 외 일원 공장설립제한 승인지역 지형도면 오류 정정

라. 전국 상수원상류 공장설립 제한·승인지역 현황

(2020. 0. 0. 기준)

시·도	시·군·구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면적(km ²)			
		공장설립제한 지역	공장설립승인지역 (시행령14조의3제1호)	공장설립승인지역 (시행령14조의3제2호)	합계
서울특별시	강동구	9.76	2.64	8.91	21.31
	광진구	5.01	0.00	0.20	5.21
	송파구	7.87	2.26	3.43	13.56
부산광역시	금정구	0.04	0.00	0.03	0.07
대구광역시	달성군	15.63	5.81	8.04	29.48
	동구	11.82	45.30	5.96	63.08
인천광역시	강화군	9.45	0.00	0.00	9.45
광주광역시	동구	0.36	0.04	0.00	0.40
	북구	0.11	0.12	0.00	0.23
대전광역시	동구	0.00	1.87	0.00	1.87
울산광역시	남구	1.09	0.00	0.00	1.09
	울주군	47.54	192.72	15.78	256.04
세종특별자치시		4.01	8.23	4.68	16.92
강원도	강릉시	46.43	198.82	37.87	283.12
	고성군	29.25	76.82	27.31	133.38
	동해시	23.92	37.66	16.55	78.13
	삼척시	53.84	102.49	43.79	200.12
	속초시	18.26	19.37	23.63	61.26
	양구군	54.93	64.09	25.71	144.73
	양양군	75.60	68.59	34.32	178.51
	영월군	45.48	114.85	30.35	190.68
	원주시	14.08	39.79	8.84	62.71
	인제군	45.38	145.43	27.66	218.47
	정선군	69.49	175.14	27.75	272.38
	철원군	32.61	104.06	20.71	157.38
	춘천시	26.35	86.58	10.11	123.04
	태백시	57.74	27.65	53.71	139.10
	평창군	61.68	114.28	63.89	239.85
	홍천군	88.65	334.39	68.22	491.26
화천군	57.25	90.10	46.36	193.71	
횡성군	3.17	104.40	2.38	109.95	

시·도	시·군·구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면적(km ²)			
		공장설립제한 지역	공장설립승인지역 (시행령14조의3제1호)	공장설립승인지역 (시행령14조의3제2호)	합계
경기도	가평군	14.47	37.86	3.44	55.77
	광주시	2.91	243.39	0.09	246.39
	구리시	8.48	22.38	2.32	33.18
	남양주시	38.68	152.20	8.93	199.81
	수원시	0.28	0.00	0.00	0.28
	안성시	16.05	70.80	7.59	94.44
	양주시	0.26	0.00	1.65	1.91
	양평군	27.81	288.19	20.25	336.25
	여주시	9.72	30.47	3.79	43.98
	연천군	23.40	75.25	11.75	110.40
	용인시	9.41	74.28	4.34	88.03
	파주시	7.02	15.67	12.40	35.09
	평택시	7.64	2.33	4.63	14.60
	포천시	9.67	11.07	0.13	20.87
	하남시	27.11	43.95	9.89	80.95
충청남도	공주시	11.44	36.00	4.40	51.84
	당진시	8.09	0.00	0.00	8.09
	보령시	34.35	57.93	13.89	106.17
	부여군	0.00	9.86	0.35	10.21
	아산시	23.15	39.17	10.25	72.57
	예산군	13.86	39.90	10.27	64.03
	천안시	38.75	107.30	14.60	160.65
	청양군	3.14	0.00	0.00	3.14
충청북도	괴산군	9.16	26.40	0.00	35.56
	단양군	16.52	42.24	0.89	59.65
	보은군	29.32	134.59	9.60	173.51
	영동군	31.68	69.41	12.93	114.02
	옥천군	41.32	84.88	19.86	146.06
	제천시	0.22	71.05	0.00	71.27
	진천군	3.41	0.00	0.00	3.41
	청주시	8.64	0.00	0.00	8.64
	충주시	24.78	141.93	19.80	186.51

시·도	시·군·구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면적(km ²)			
		공장설립제한 지역	공장설립승인지역 (시행령14조의3제1호)	공장설립승인지역 (시행령14조의3제2호)	합계
경상남도	거제시	7.29	0.00	7.31	14.60
	거창군	42.58	95.68	17.48	155.74
	김해시	38.52	88.99	18.35	145.86
	남해군	4.16	0.00	0.00	4.16
	밀양시	62.15	156.34	25.64	244.13
	사천시	12.62	27.50	2.53	42.65
	산청군	22.54	225.04	10.75	258.33
	양산시	22.47	82.31	21.83	126.61
	의령군	15.80	36.64	7.09	59.53
	진주시	14.27	71.41	1.39	87.07
	창녕군	27.22	67.33	8.26	102.81
	창원시	22.00	63.25	11.03	96.28
	통영시	1.02	0.00	0.00	1.02
	하동군	13.19	96.08	1.33	110.60
	함안군	6.00	42.18	0.67	48.85
	함양군	34.89	107.63	23.83	166.35
	합천군	31.76	36.29	13.51	81.56
경상북도	경산시	3.83	15.19	1.01	20.03
	경주시	78.35	238.36	46.89	363.60
	고령군	28.78	45.44	9.79	84.01
	구미시	16.60	189.26	14.06	219.92
	군위군	45.63	94.75	49.02	189.40
	김천시	24.96	52.99	21.82	99.77
	문경시	46.69	86.17	34.84	167.71
	봉화군	56.21	105.83	59.45	221.49
	상주시	54.31	142.70	30.22	227.23
	성주군	22.74	103.82	8.05	134.61
	안동시	25.63	121.98	6.36	153.97
	영덕군	48.25	68.37	29.33	145.95
	영양군	92.80	145.28	73.15	311.23
	영주시	47.46	105.93	42.91	196.30
	영천시	9.09	33.39	20.83	63.31
	예천군	62.00	103.20	35.81	201.01
	울릉군	10.79	0.00	0.00	10.79
	울진군	25.86	65.89	16.36	108.11
	의성군	65.15	177.90	47.83	290.88
	청도군	8.12	145.36	3.02	156.50
청송군	55.82	98.27	28.08	182.17	
칠곡군	0.00	14.59	0.00	14.59	
포항시	42.31	125.68	26.54	194.53	

시·도	시·군·구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면적(km ²)			
		공장설립제한지역	공장설립승인지역 (시행령14조의3제1호)	공장설립승인지역 (시행령14조의3제2호)	합계
전라남도	강진군	17.72	28.39	14.67	60.78
	고흥군	7.10	0.00	0.00	7.10
	곡성군	3.35	0.80	0.00	4.15
	광양시	23.38	49.29	5.73	78.41
	구례군	17.90	34.53	5.74	58.17
	나주시	3.14	0.00	0.00	3.14
	담양군	3.55	52.32	0.00	55.87
	무안군	3.00	0.00	0.00	3.00
	보성군	22.37	308.82	40.34	371.53
	순천시	26.33	281.44	15.91	323.68
	신안군	9.81	0.00	0.00	9.81
	여수시	4.40	0.00	0.00	4.40
	영광군	0.24	0.00	0.00	0.24
	영암군	0.26	40.62	0.00	40.88
	완도군	3.24	0.00	0.00	3.24
	장성군	17.17	3.35	7.12	27.64
	장흥군	13.50	137.99	3.56	155.05
	진도군	2.27	0.00	0.00	2.27
	함평군	27.65	25.25	10.51	63.41
	전라북도	해남군	12.87	29.53	7.09
화순군		17.49	279.55	2.60	299.64
남원시		18.82	47.31	8.14	74.27
무주군		62.19	28.41	33.36	123.96
부안군		5.36	30.84	4.42	40.62
순창군		16.57	25.13	7.83	49.53
완주군		3.14	0.00	0.00	3.14
익산시		1.01	0.00	0.00	1.01
임실군		16.83	33.69	2.47	52.99
장수군		7.54	31.70	5.14	44.38
제주특별자치도	정읍시	33.58	84.49	11.82	129.89
	진안군	94.74	259.48	31.23	385.4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190.53	0.00	1.94	192.47
	서귀포시	156.84	0.00	0.00	156.84

3. 관계도면

- 기 고시된 상수원상류 공장설립 제한·승인지역에 대하여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련부서에 비치하고 있으며,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련부서에서 열람 가능 하고,
- 변경되는 지자체의 지형도면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관련부서) 또는 환경부(물이용기획과 김기 조 044-201-711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총괄도, 상세 지형도면 게재 생략)

4. 의견제출

상수원상류 공장설립 제한·승인지역 지형도면 변경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22일까지 환경부 물이용기획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269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토교통부령에 휠체어 이용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휠체어 탑승 버스의 설비 장착 기준」을 신설하기 위하여 시행령에 위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휠체어 탑승 버스의 설비 장착 기준」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4조제4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로 2020년 11월 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 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이유)
- 나. 성명(법인·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보내실 곳: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6동 622호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
(전화: 044-201-3871, 팩스: 044-201-5586)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271호

이천마장 택지개발사업(2단계) 준공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563호(관보 제19814호, 2020.8.12.)로 택지개발사업 지구지정 변경(4차), 개발계획 변경(10차) 및 실시계획 변경(9차) 승인 고시된 이천마장 택지개발사업(2단계)이 준공되었기에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 1. 사업의 명칭 : 이천마장 택지개발사업(2단계)
-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 가. 사업시행자의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 다. 대 표 자 의 성 명 : 변 창 흡
- 3.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오천리, 양촌리, 회억리, 이치리, 관리 일원